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37
----------	-------

발의연월일 : 2026. 4. 20.

발 의 자 : 정희용 · 김기용 · 백종현
구자근 · 김종양 · 최보운
고동진 · 박준태 · 최수진
강대식 · 강명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교원 1인이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다수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원의 업무 과중, 특수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7조제4항 신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양성”을 “양성·확보”로 한다.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 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p> <p>5. 특수교육교원의 <u>양성</u> 및 연 수</p> <p>6. ~ 12.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p> <p>① ~ ③ (생 략)</p> <p><u><신 설></u></p>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양성 · 확보</u>- -----</p> <p>6. ~ 1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3항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의 배 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특 수교육교원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 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u></p>